

의안 번호	1572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심사보고서</b>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9. 6.(금)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9. 6.(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9. 18.(수)

## 2. 제안설명 요지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 가. 제안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500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하여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의 규정과 일치시켰으며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포획률을 높이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피해 방지단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 ※ 울주군 : 실탄, 수렵보험료 등 지원

### 나.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조)
- 야생동물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현장 확인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피해지역 동장 보고자란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 다.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1조의3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제15조, 제17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경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 1. 법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 2. 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